

마리아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(제32조의8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1호	자격취소		
나. 법 제28조의12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2호	자격취소		
다. 마리아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3호	자격정지 1년	자격정지 2년	자격취소
라.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아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4호	자격취소		